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 45 호 2015. 5. 1(금)

공 고

-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1
-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9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 2015-592호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 비용 세입조항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지급조항 신설 (안 제3조제6항)

3. 의견제출

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교통과장)

- 우편번호 : 590-701/ 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8)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063-620-6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교 통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 비용 세입 조항 신설(안 제2조제9호)
- 나.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지급 조항 신설 (안 제3조제6항)
- 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지출 조항 신설 (안 제3조제7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5. 1. ~ 2015. 5. 21.(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불임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원시”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 제3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10. 그 외 수입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비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원시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p>
<p>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p>	<p>제2조(세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 7. (생략) 8. 과태료(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9. 그 밖의 잡수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 제3항 및 제14조제1항-- 2.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p><신 설></p>	<p>10. 그 외 수입</p>
<p>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3조(세출) ----- ----- 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

차량은 제외 한다) 선정 운영
에 관한 비용

----- 제외한
다)- -----

6. 그 밖의 주차장 확충에 필요
한 비용

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신 설>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
과·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
한 비용

제4조(잉여금의 처리) 당해연도
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
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다.

제5조(보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
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할 경
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
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15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 2015-599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남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남원 시세 조례」

2. 개정이유

가. 개인균등분 주민세액(고지서 1매당) 대비 징수 비용이 많이 들고 1999. 6월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정액 세율을 물가 상승률 반영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게 대응하고 행정자치부 세율 상향 권고에 따라 주민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자체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함.

나.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지방세관계법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읍·면 2,000원, 동 3,6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안 제6조제1호가목 및 나목)

※ 2015년도는 7,000원으로 인상

나.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용어 정리 및 신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4. 의견제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전화 : 063-620-6276 FAX : 063-620-6710)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담당자 김미화(전화:063-620-62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가. 개인균등분 주민세액(고지서 1매당) 대비 징수 비용이 많이 들고 1999. 6월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정액 세율을 물가 상승률 반영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게 대응하고 행정자치부 세율 상향 권고에 따라 주민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자체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함.

나.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지방세관계법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읍·면 2,000원, 동 3,6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안 제6조제1호가목 및 나목)

※ 2015년도는 7,000원으로 인상

나.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용어 정리 및 신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 ~ 2015. 5.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열거하는”을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불상황”을 “수불(受拂) 상황”으로 한다.

제6조 제1호가목 중 “읍·면”을 “시”로, “2,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 지역”을 “시”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를 “사업소는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실 발생일”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축하였을 때”를 “개축하였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한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이전하였을 때”를 “이전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폐업하였을 때”를 “폐업하였을 경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재하여”를 “적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 발생일로부터”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설하였을 때”를 “신설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전하였을 때”를 “이전하였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폐업하였을 때”를 “폐업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시”를 “평상시”로, “변경된 때”를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12조 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를 “영 제110조”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면적이 증감된 때”를 “면적을 증감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축한 때”를 “개축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증감한 때”를 “증감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변경된 때”를 “변경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설치하였을 때”를 “설치하였을 경우”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한 때”를 “취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멸실되었을 때”를 “멸실되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한 때”를 “취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멸실되었을 때”를 “멸실되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20조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에 열거하는”을 “호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을”로,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23조 중 “지정일”을 “지정한 날”로 한다.

제24조제1호 전단 중 “산정”을 “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를 “초과한 자동차”로, “가산”을 “더”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정정을”을 “고쳐달라고”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균등분의 인상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개인의 세액은 7,000원으로 한다.

-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 1. -----개축하였을 경우
- 2. -----된 경우
- 3. -----변경한 경우
- 4. -----이전하였을 경우
- 5. -----폐업하였을 경우

제10조(신고의무) ① -----

적어-----
--.

②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

- 1. -----신설하였을 경우
- 2. -----이전하였을 경우
- 3. -----폐업하였을 경우
- 4. 평상시-----변경된 경우

제12조(세율) -----

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 1. ~ 7. (생략)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를-----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

-----호의-----

-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

-----재산을-----

-----밖에-----

② (생략)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 3. (생략)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

--지정한 날-----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

1. -----

-----산출-----

-----.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

-----초과한
자동차-----

-----더-----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전라북도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재정과	성명	이영태
				전화번호	063-620-6270
	담당자	부서명	재정과	성명	김미화
				전화번호	063-620-6676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일간)			
	입법예고	(20일간)			
	법제처 심사*	(2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1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